

#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142
------------	------

2016년 6월 21일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수 석 전 문 위 원

### 1. 제안경위

- 2016. 4. 20 우미경 의원 발의(찬성자 10명)(2016. 4. 22 회부)

### 2. 제안이유

- 조례의 원활한 이해를 위해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3. 주요골자

-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에 규정한”을 “에서 규정한”으로 하며 “일정기간”을 “일정 기간”으로 하고 “범위 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하며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하며 “긴급을 요하는”을 “긴급한”으로 하고 “그러지 아니하다”를 “예외로 한다”로 하며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고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하며 “로부터”를 “부터”로 함.(안 제2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6조, 제18조, 제20조, 제21조)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 5. 검토의견

- 이 개정조례안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정책적 쟁점사항은 없음.
- 다만, 이 조례 제2조제1호나목에서 개정 전 법률인 「임대주택법」<sup>1)</sup>에 따른 “전세 후 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준공공임대주택”을 규정하고 있어, 현행 법령 규정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겠음.
- 참고로,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은 어려운 법률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 명확화를 통해 국민 누구나 법령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고쳐 나감으로써 한 차원 높은 법제서비스를 제공하고, 법령에 대한 일반 국민의 접근을 보다 쉽게 하려는 것임.

---

1) 「임대주택법」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2015.8.28.) 및 시행(2015.12.29.)되었음

##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제바목 중 “기타”을 “그 밖에”로 한다.

제7조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에 규정한”을 “에서 규정한”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일정기간”을 “일정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범위 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16조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긴급을 요하는”을 “긴급한”으로 하고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예외로 한다”로 한다.

제20조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고 “범위 안에서”를 “범위  
에서”로 한다.

제21조 중 “로부터”를 “부터”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p> <p>1. "서울공공주택"이란 서울특별시에서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주택을 말한다.</p> <p>가~마. (생략)</p> <p>바. <u>기타</u>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대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개발 및 공급하는 주택</p>	<p>제2조(정의)</p> <p>1. ----- ----- -----.</p> <p>가~마. (현행과 같음)</p> <p>바. <u>그 밖에</u> ----- ----- -----</p>
<p>제7조 (공급계획의 내용)</p> <p>1~4. (생략)</p> <p>5. <u>기타</u> 서울공공주택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p>	<p>제7조 (공급계획의 내용)</p> <p>1~4. (현행과 같음)</p> <p>5. <u>그 밖에</u> ----- -----</p>
<p>제8조(장기전세주택)</p> <p>①~② (생략)</p> <p>③ 시장은 제1항에 규정한 장기전세주택 각 호에 대하여 규모 및 규모별 비율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고시된 내용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야 한다.</p>	<p>제8조(장기전세주택)</p> <p>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에서 규정한 ----- ----- ----- -----.</p>
<p>제9조(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p> <p>① (생략)</p> <p>② 시장은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p>	<p>제9조(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주택의 보증금(계약조건에 따라 일정기간 월세를 미리 납부한 금액인 선납월세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100분의 30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전세보증금이 6천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50까지 지원할 수 있다.</p>	<p>-----<u>일정 기간</u>----- ----- ----- ----- ----- ----- -----.</p>
<p>제10조(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①~② (생략) ③ 시장은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리모델링 공사비를 호당 최대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지원기준을 초과하여 주택공급자가 리모델링 공사를 원할 경우 주택공급자의 부담으로 추가 공사를 실행할 수 있다.</p>	<p>제10조(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u>범위에서</u> ----- ----- ----- ----- -----</p>
<p>제1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생략)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p>	<p>제1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경우에는</u> ----- -----. ③ ----- ----- ----- <u>경우에는</u> -----</p>

<p>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p> <p>④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u>1회에 한하여</u> 연임할 수 있다.</p>	<p>-----.</p> <p>④ ----- <u>한 차례만</u> -----.</p>
<p>제18조(회의소집 및 운영)</p> <p>①~② (생략)</p> <p>③ 시장 또는 위원장이 시통합심의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u>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제18조(회의소집 및 운영)</p> <p>①~② (생략)</p> <p>③ ----- ----- ----- ----- ----- <u>긴급한</u> ----- <u>예외로</u> <u>한다.</u></p>
<p>제20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시통합심의위원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u>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u>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20조(수당 등) ----- ----- ----- <u>대해서는</u> ----- <u>범위</u> <u>에서</u> ----- -----.</p>
<p>제21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u>부터</u> 2년으로 하되, 위원회 운영에 대한 성과 평가 후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p>	<p>제21조(위원회의 존속기한) ----- ----- <u>부터</u> ----- ----- -----.</p>